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구 미 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시행일 2022. 1. 13.)에 따라 해당 법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안 제2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관련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제8호”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27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법 제47조 제1항제8호”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를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3조(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 후단”으로 한다.

제4조(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구미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
가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미시 낙
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2항 중 “등은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로 한다.

제7조(「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구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한다.

제8조(「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제9조(「구미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의 개정) 구미시명예시민증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 및 제27조”로 한다.

제10조(「구미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별표 2 내무행정 제2호가목의 근거법령란 중 “지방자치법 제106조”를 “「지방자치법」 제119조”로 한다.

제11조(「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제12조(「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13조(「구미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를 “「지방자치법」 제9조”로 한다.

제14조(「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의 개정)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제15조(「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의 개정)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를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로 한다.

제16조(「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113조”를 “제12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115조”를 “법 제128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4조의2”를 “법 제7조”로 한다.

제17조(「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의 개정)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로 한다.

제19조(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조”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제20조(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1조(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한다.

제22조(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지방자치법」 제157조”로 한다.

제23조(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24조(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지역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지역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5조(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26조(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구미시 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예산”이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 제142조 ----- ----- -----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 법 제47조제1항제8호-----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u>법 제42조제1항</u> 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 ----- ----- ----- <u>법 제51조제1항</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8조----- ----- -----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 ② (생략)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조례안의 경우 <u>비용추계서</u> 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구미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 <u>비용추계서</u> 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 -----.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④ 「지방자치법」 제19조----- -----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구미시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 -----. ----- -----.
--	------------------------------------

□ 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공포 방법) 자치법규등은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제7조(공포 방법) ----- -----.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 ----- ----- ----- -----.

□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 ----- -----. ----- ----- -----

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 ②·③ (현행과 같음)
--	---------------------------------

□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사용료 등) ① (생략) ②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른다. ③ (생략)	제7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등 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 ③ (현행과 같음)

□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 ----- ----- ----- ----- -----. ----- -----.

1. <u>지방자치법 제82조</u>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생략) ②·③ (생략)	1. 「<u>지방자치법</u>」 제102조---- -----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지방자치법</u> 」 제4조의2에 따른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방자치법</u> 」 제7조----- ----- -----.

□ 구미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u>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u> 및 <u>제14조</u> 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 ----- ----- ---- 「 <u>지방자치법</u> 」 제17조제2항 및 <u>제27조</u> ----- -----.

□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출장소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 ----- ----- ----- ----- ----- -----.

□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른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 ----- -----.

□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할 것을 청 구한 때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 서하여야 할 주민 수에서 1 미 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 를 1로 본다.	제2조(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19조----- ----- ----- ----- ----- ----- -----.
---	---

□ 구미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구미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 ----- ----- -----.

□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른 읍·면·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 ----- -----.

□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동의 통·리장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 -----.

□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구미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 ----- ----- ----- ----- -----.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시에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	제11조(설치) ① ----- ----- 제126조----- ----- ----- ----- ----- -----.

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8조(설치) ① <u>법 제114조</u>에 따 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생략) 제21조(설치) ① <u>법 제115조</u>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원 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 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 ② (생략) 제24조(설치) ① <u>법 제3조제3항</u>· <u>제4항</u> 및 <u>제4조의2</u>에 따라 읍· 면·동을 둔다. ② (생략)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설치) ① <u>법 제127조</u>----- -----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설치) ① <u>법 제128조</u> ----- -----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설치) ① ----- ----- <u>법 제7조</u>----- -----. ② (현행과 같음)
---	---

□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와 행정능률을 위하여 「지방자 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방자 치법」 제7조제4항----- ----- -----.

□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현행	개정안
제15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 징수기준은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방자치법」 제154조----- ----- ----- -----.

□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 5. (생략)	제2조(정의) ----- -----. 1. ----- 「지방자치법」 제16조----- ----- -----. 2. ~ 5. (현행과 같음)

□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제1조(목적) -----

의 자활자립과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구미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 ----- ----- -----.
---	--

□ 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등)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략)	제2조(설치 등) ① ----- ----- 「지방자치법」 제141조----- ----- ----- -----. ② (현행과 같음)

□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용료 등) ①·② (생략)	제10조(사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른다.	③ ----- ----- 「지방자치법」 제157조-----.
--	---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제21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21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 ----- -----. 1. ~ 3. (현행과 같음)

□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지역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지역인 구미시 산동읍(이하 “읍”이라 한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 읍발전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 ----- ----- ----- ----- ----- ----- -----.

□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 「노인복지법」 제34조·제35조 및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 방자치법」 제161조----- ----- ----- ----- ----- -----.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구미시의 수도요금과 급수 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 ----- ----- ----- -----.

□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물 재이용시설의 신고·관리 및 관련 요금의 부과·감면 등의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2021.10.19. 개정, 2022.1.13.시행)

-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7조(주민의 권리)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③ 생략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 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⑦, ⑧ 생략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9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

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

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

④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2.1.13.시행 예정)

제31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결산안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또는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7명 이상 2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6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소 관 부 서		기 획 예 산 담 당 관
입 안 자	과 장	박 영 일
	담 당	김 동 순
	담 당 자	김 효 미 (480-6528)